

# 신호, 지시위반 사고처리

이 기 무

〈동부화재 보상전략팀장〉

##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통사고 특혜법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도록 하면서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다고 판단되는 사망사고 및 빽소니사고와 중앙선 침범사고를 포함한 10가지 유형의 사고 만큼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교통사고 유형중에 신호, 지시위반사고가 있다. 그만큼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정도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가·피해자간에 신호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신호, 지시위반은 가해자에게

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히 높은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보상받을 손해액에서 그만큼 공제가 되는 민감한 사항인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처리되는 사고유형에 대하여 알아본다.

## 2. 신호기 및 지시표지 판의 종류

신호기 및 지시표지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신호기, 지시표지는 주로 여러 방향의 도로가 합쳐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교차로나 보행인이 도로 횡단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지시를 반드시 지키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 가. 신호기의 정의 및 종류

우리는 흔히 전기의 힘에 의

해 움직이는 신호등만을 신호기로 생각하기 쉬우나 도로교통법에 있어서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인력 또는 전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모든 장치를 말하며 그 종류는 전력에 의하여 포착되는 자동신호기, 전력과 인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수동신호기, 그리고 경찰관이 수신호 등으로 사용하는 전지 및 기타의 신호용구 등이 있다.

이러한 신호기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도로관리자가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안전표지의 정의 및 종류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인도 등을 표시하는 표시판 또는 노면상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와 선 등의 표지를 말하고, 교통안전표지는 안전표시판과 안전

표시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종류의 안전표시판은 조심하라는 뜻의 주의표지, 금지, 제한의 뜻을 가진 규제표지, 명령, 허용하는 뜻의 지시표지, 방향, 방면, 거리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 본 표지의 뜻을 보완하는 보조 표지 등이 있으며 금지, 제한 및 명령, 허용의 뜻을 지닌 한정표지 등이 있다.

물론,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신호기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그리고 도로 관리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

### 3. 신호, 지시위반 사고 결정 및 구체적 사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신호지시 위반사고는 단순히 전력에 의해 움직이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내용을 명확하게 위반한 경우만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즉,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신호기와 안전표지등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등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이면서 신호지시 위반사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 사고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먼저,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 사고가 야기된 경우이다.

특히, 수신호는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이라 하더라도 신호기에 우선하며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와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현병이 포함된다.

또한,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 장소에서 한정된 내용의 신호를 표시하는데 반하여 경찰관 등 수신호를 하는 자는 교통의 상황에 따라 적기적소에서 능률적으로 신호지시를 하게 되므로 수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차로에서 황색주의 신호에 무리하게 진입, 주행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와 교차로에 대기중 황색주의신호에 사전 출발을 시도하다가 이미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도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교차로 진행신호에 유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된 경우,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중 사고

및 청계고가도로 등 가변차선도로에서 통행금지도로 주행중 사고도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발생한 사고는 보행인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사고로 처리되며 신호위반으로는 처리되지 않는다(차량 신호등까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위반에 해당됨.).

끝으로 교차로 등에 쌍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차량 모두를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며 각 차량에 대한 신호위반의 정도, 충돌상황, 상대편 차량 발견지점과 피양 및 제동 조치여부, 충돌부위, 목격자 진술 등 제반상황을 조사하여 서로 잘못한 비율을 정하게 되고 그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하게 된다.

신호등은 교통소통을 위한 약속이며 안전을 지키는 생명등이다. 교차로에 이르면 진행신호라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측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신호에 따라 정지한 차량은 진행표시가 들어왔다고 해도 곧바로 출발하지 말고 항상 좌·우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